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 증원 및 숙의공론화장 운영 의무화 등〉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25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위원 증원 및 조정·의결 기능 추가	4
2. 숙의공론화장 의무화 및 관련 사업 예산 지원근거 마련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7. 10.
3. 회 부 일 : 2025. 7. 11.

II. 제안이유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조정·참여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음.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후 2년 후에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2024.10월)되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기본전략 수립 등을 이행한 곳은 약 50%에 불과해 정부의 이행 수준이 미흡한 상황임.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 권고 사항이자 지속가능발전 실효적 이행의 핵심인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속의 공론화장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법 제29조)은 임의적 조항이라 전혀 진행되지 못함.

한편, 국제민간정책연구소인 지속가능발전해법연구소(SDS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점수는 77.3점으로 167개 국가 중 33위를 차지하는 등 2019년 18위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 중임.

이에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이자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참여 숙의공론 체계의 법적 이행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속가능발전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의 추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기능에 더하여 심의·조정·의결의 기능을 부여함(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나. 현재 법조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의 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므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련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8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5년)과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2년) 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참여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안 제29조).

라.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 안정성 확보, 투명성과 공정
성 강화, 효율적인 자금 배분,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재원 조
달 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

IV. 검토의견

1. 위원 증원 및 조정·의결 기능 추가

□ 개정안은 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6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고(안 제18조제1항), ② 현재 ‘심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조정 및 의결’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u>심의하기</u>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 ----- ----- <u>심의·조정·의결하기</u> ----- -----.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6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u>80명</u> ----- ----- -----.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 . 1. ~ 14. (생략)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 ----- <u>심의·조정·의결한다</u> . 1. ~ 14.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 .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심의·조정·의결한다</u> .

□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¹⁾에 기초해 조화·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하는데,²⁾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이 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함³⁾.

또한, 국가기본전략의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시책⁴⁾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는데, 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⁵⁾

□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⁶⁾하는 국가위원

-
-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
 -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4) “지속가능발전 시책”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의 내용을 말함.
 - 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회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⁷⁾,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장(12명)과 시·도지방위원회 위원장(17명)이 됨.⁸⁾

2025년 11월 현재, 국가위원회는 총 5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위원은 12명(모두 당연직), 민간위원은 43명(당연직 17명, 위촉직 26명)임.

<국가위원회 구성 현황(2025년 11월 기준)>

위원회 구성 현황			법률상 정원
정부위원 (총12명)	· 당연직 (12명, 기재·교육·외교·행안·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장)	총 55명	총 60명
민간위원 (총43명)	· 당연직 (17명, 17개 시도 지방위원장) · 위촉직 (26명)		

(자료: 국무조정실)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 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을 말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정부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과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⁹⁾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¹⁰⁾

□ 개정안은 국가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60명에서 80명으로 20명 증원하고,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현행 ‘심의’ 기능 외에 ‘조정 및 의결’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영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첫째, 개정안은 위원 수 확대(60명 → 80명)를 통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각각 증원하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은 5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행정기관과의 정책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원 구성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행 시행령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¹¹⁾ 기관장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위원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현행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지속가능한 경제 성장¹²⁾, 포용적 사회 구현¹³⁾,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¹⁴⁾ 등)에는 양질의 일

11)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1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임금·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자리 창출, 차별 철폐,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식량안보, 보편적 의료보장, 교육 접근성, 성평등, 물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원 정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어 보임.

하지만, ① 현행법에 따른 최대 위원 정원이 60명임에도 현재 55명만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정부위원의 증원은 시행령 개정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별도의 증원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② 현행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법(2022. 7. 5. 폐지)」¹⁵⁾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부장관 소속)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 7. 5. 시행)」시행에 맞춰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설치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위원 정원도 이미 한차례 증원(50명 → 60명)되었고,

③ 동 위원회는 2024년 10월에서야 구성을 완료해 현재까지 1년 남짓 활동¹⁶⁾하여 그 추가 증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5) 「지속가능발전법(2022.7.5.폐지)」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국가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구 분	본회의 횟수			분과위원회 횟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4년	1	1	0	7	7	0
2025.3.	1	0	1	4	4	0

(자료: 국무조정실)

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 증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

□ **둘째**, 개정안은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조정’ 및 ‘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조정’ 기능의 경우에는 기관 간 의견 조율 절차를 명문화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¹⁷⁾상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주체는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가 아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행정기관의 의사를 구속하지 못하는 ‘자문’에 해당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결’ 기능을 법률 조문에 추가하여도, 국가기본전략 등과 관련된 동 위원회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 달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규제기본법」¹⁸⁾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의결’

1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18)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을 법률 조문상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개혁위원회¹⁹⁾가 ‘기존규제 정비지침’의 작성 주체이며, 이 지침에 맞추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관련 행정기관의 의사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법적 성격과는 차이가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19)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2. 숙의공론화장 의무화 및 관련 사업 예산 지원근거 명시

□ 개정안은 ① 속의공론화 대상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책 수립, 이행 및 평가’로 구체화하고(안 제29조제1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단위),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2년단위)²⁰⁾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속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③ 지속가능발전 시책 및 속의공론화장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노력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u>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u>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 ----- ----- ----- <u>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책 수립, 이행 및 평가하는</u> ----- ----- ----- ----- ----- ----- ----- <u>. 다만,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현행법 제29조²¹⁾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4조·제26조²²⁾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속가능발전정책 확산 등을 위한 재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민관협력

- 2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2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투명성·포용성·대표성·책임성·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2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체의 활동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개정안은 국가기본전략·지방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해,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실질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할 경우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현행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책 확산 등을 위한 재정 지원 의무 및 민관협력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외에, 개정안과 같이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과 관련해 별도의 예산 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법 제4조·제26조의 취지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국무조정실은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절차 지연 및 행정비용 부담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과 같이 재량사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지방자치단체들²³⁾도 행정 및 재정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숙의공론화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3

23)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경남, 서울 강북구, 서울 구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중구, 경기 고양시, 경남 함안군에서 제출한 의견